

소 장

원 고 ㅇㅇㅇ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◇◇◇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•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제3자이의의 소

청 구 취 지

- 1. 피고가 소외 박●●에 대한 ○○지방법원 20○○가단○○○○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○○. ○○. ○. 별지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.
-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1. 원고는 20○○. ○. ○. 소외 박●●에게 금 10,000,000원을 대여하여 주면서 위 돈을 담보할 목적으로 별지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.

갚을 날짜는 20○○. ○. ○○.로 하며 이자는 연 20%로 하며 갚을 날짜까지 위돈을 갚지 못할 경우 이자를 연 25%로 하기로 약정하고,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





- 2. 소외 박◉◉는 지금까지 위 차용금 10,000,000원을 갚지 않고 있으므로 담보목적 인 소외 박◉◉의 별지목록 기재 물건의 소유권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원고에 게 양도된 것이므로 원고는 적법한 소유자가 되었습니다.
- 3. 그런데 피고는 소외 박◉◉에게 20○○. ○○. ○○. ○○지방법원 20○○가단○○○○ 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하여 같은 법원 소속집행관으로 하여금 20○○. ○○. 별지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하였습니다.
- 4.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물건에 대하여 정당한 소유자로서 피고로부터 집행을 당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.

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 동산압류집행조서

1. 갑 제2호증 공정증서정본

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 각 1통

1. 소장부본 1통

1. 송달료납부서 1통

2000. 0. 0.

위 원고 ○○○ 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지방법위 귀중



물 건 목 록

품명	수량(대)
○○ 에어컨(23평형)	1
○○지펠 냉장고(676ℓ)	1
○○ 16인치 스탠드 선풍기	1

물건소재지: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. 끝.

그 된 HÌ OÌ	소멸시효					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 □ ○○년(□ 소멸시효일람표 *** 기 간 □ ○○년(□ 소멸시효일람표 **** 기 간 □ ○○년(□ 소멸시효일람표 ***** 기 간 □ ○○년(□ 소멸시효일람표 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					
제출부수	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					
비용	·인지액 : ○○○원(□=산정방법) ※ 아래(2)참조					
불복절차	·송달료 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 ·항소(민사소송법 제390조)					
및 기 간	·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					
	·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					
	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, 당해					
	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또는 제3자이의의 소기 제기된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계속 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					
이 없어 부적법함. 물건에 대한 매각절차는 종료되었으나 배당절차는 아직 종 료되지 아니한 경우, 경매목적물의 경락인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면 경 매절차에서 집행관이 영수한 매득금은 경매목적물의 대상물로서 제3자이의의 소에서 승소한 자가 그 대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 로, 매각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배당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이상 제3자						
				이의의 소는 여전히 소의 이익이 있음(대법원 1997. 10. 10. 선고 96다49049 판		
			결).			
	·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의 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 하더라도 담보목적물에 I					
	한 사용・수익권은 없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소유자임					
	을 주장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(대법원 1994. 8. 26. 선고 93다44739 판결).					
기 타	·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					
	보권설정자를 제외한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자신이 그 동산의 소유가					
	임을 주장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,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양도담보설정계 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					
	경우, 양도담보설정자가 그 피담보채무를 불이행한 때에는 양도담보권자는 양					
	도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목적물인 동산을 환가함에 있어서 집행증서에 기하					
	지 아니하고 양도담보의 약정 내용에 따라 이를 사적으로 타에 처분하거나 스 스로 취득한 후 정산하는 방법으로 환가할 수도 있지만, 집행증서에 기하여 담					
	보목적물을 압류하고 강제경매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환가할 수도 있으며, 동산					
	의 양도담보권자가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공정증서에 기하여 담보목적물을 압					
	류하고 강제경매를 실시하는 경우,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한 경매절차는 형식상 은 강제경매절차에 따르지만 그 실질은 일반채권자의 강제집행절차가 아니라					
	동산양도담보권 실행을 위한 환가절차로서 그 압류절차에 압류를 경합한 양도					
	담보설정자의 다른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압류경합권자나 배당요구권자로 인정될 수 없고, 따라서 환가로 인한 매득금에서 환가비용을					
	공제한 잔액은 양도담보권자의 채권변제에 전액 충당함이 당연하고 양도담보					
	권자와 압류경합자인 다른 채권자 사이에서 각 채권액에 따라 안분비례로 배					
	당할 것이 아님(대법원 1999. 9. 7. 선고 98다47283 판결).					



※ (1) 관 할

집행법원의 관할에 속함. 사물관할은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때에는 집행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합의부가 이를 관할하며, 전속관할임.

※ (2) 인 지

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. 다만,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·직불카드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,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(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).

●●●분류표시: 민사소송 >> 소의 제기 >>확인 및 형성의 소